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08 발의연월일: 2025. 3. 7.

발 의 자:이용우・박홍배・전진숙

정혜경 · 김태선 · 장철민

박용갑 • 이학영 • 임미애

천하람 · 김주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하여 '당선 전' 및 '임기 중'을 불문하고 '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, 사후 신고 및 심사'절차를 거치고 있음.

'임기 중'에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려는 경우 그 이전에 가능여부를 알 수 없어 우선 겸직 또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고, 이를 신고하여 가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는 '사전 겸직, 사후 신고 및 심사'절차 체계를 가짐.

이에 따라 의원이 겸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 신고를 한 이후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의원이 겸직 중인 직을 휴직·사직하거나 영리업무 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'사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, 사후 신고 및 심사'절차에서

'사전 신고 및 심사, 사후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'절차로 전환하여 겸 직 또는 영리업무 종사하기 전에 그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내실화를 강 화하고자 함(안 제29조 및 제29조의2). 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조제3항 중 "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"를 "가지려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려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

제29조의2제3항 중 "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"를 "종사하려는 경우에는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려는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조(겸직 금지) ①・② (생	제29조(겸직 금지) ①・② (현행
략)	과 같음)
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	3
각 호의 직(제3호의 직은 제외	
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	
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	
시 후 1개월 이내에, 임기 중에	
제1항 각 호의 직을 <u>가지는 경</u>	<u>가지려는 경</u>
<u>우에는 지체 없이</u> 이를 의장에	<u> 우에는</u>
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려
	고 하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
	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
	에 그 직을 겸할 수 없다.
<u>⑦</u> ・ <u>⑧</u> (생 략)	<u>⑧</u> ・ <u>⑨</u> (현행 제7항 및 제8항과
	같음)
제29조의2(영리업무 종사 금지)	제29조의2(영리업무 종사 금지)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	③
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	
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	
월 이내에, 임기 중에 제1항 단	
서의 영리업무에 <u>종사하게 된</u>	<u>종</u> 사하려는 경

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 우에는-----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.

④ ~ ⑥ (생 략)

<신 설>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 려는 업무가 영리업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 까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 다.